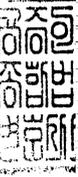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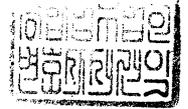
등부 2014 년 제 3636 호

인 증 서




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약정서

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사회복지과


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약정서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과 **아름다운정릉1동 사람들협동조합**(이하 “협동조합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8가길 6(정릉동)에 위치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약정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“성북구”가 시설의 관리·운영을 “협동조합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대상 재산의 표시) ① 위탁대상 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8가길 6(정릉동)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지상2층/옥상(270.16㎡)의 모든 시설물과 장비로 한다.

② “성북구”가 “협동조합”에게 위탁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명은 별지1의 목록과 같다.

제3조(위탁범위) ① “성북구”는 “협동조합”에게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재산관리와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탁한다.

1. 시설, 장비, 물품관리 등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2. 기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
② “협동조합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각종 세대통합형 마을공동체 사업(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



는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운영 등)

2.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
3. 조합원 및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는 각종 사업
4.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5. 지역내 커뮤니티 공간 제공

제4조(위탁기간) 위탁운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“협동조합”은 위탁운영 기간 중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“협동조합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성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안전사고 등 긴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 정지 조치한 후 긴급사유 소멸 즉시 “성북구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“협동조합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재산관리) ①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

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, 교환, 대여,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 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.

③ 이 협약 체결 이후에 “성북구”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이 협약 체결 이후에 “협동조합”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“성북구”에게 이를 기부하고, 수탁 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위탁운영을 이유로 “성북구”에 대하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재산의 연고권·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.

⑥ “협동조합”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주요장비 등을 구입, 폐기,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성북구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⑦ “협동조합”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“성북구”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사업계획) ① “협동조합”은 매년도마다 다음 연도의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전 까지 “성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협동조합”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성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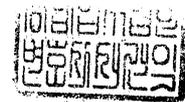
제8조(운영비,인건비 지급 및 집행) ① “성북구”는 이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운영비”라 한다)를 “협동조합”에게 지급하되, 그 금액은 “성북구”의 예산과 “협동조합”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“성북구”가 결정한다.

②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신청서에 명시한 재정부담계획에 따라 전체 운영비의 7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해야한다.

③ “협동조합”은 운영비를 “성북구”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, 지방재정법,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④ “협동조합”은 운영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며,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,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비 정산) ① “협동조합”은 “성북구”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잔액은 다음연도 1월내에 “성북구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

② “협동조합”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내에 운영비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성북구”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 등) ①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무상

으로 관리하며 위탁공간 내에서는 공공복리사업만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공간 내에서 조합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면적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허가조건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“협동조합”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 등) ① “협동조합”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협동조합”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협동조합”은 제1항의 사유로 사건·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,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“협동조합”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, 이를 “성북구”에게 보상 요청할 수 없다.

③ “협동조합”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“협동조합”이 “성북구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④ “협동조합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성북구”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협동조합”은 이를 “성북구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약정의 해지 등) ① “성북구” 또는 “협동조합”이 위탁약정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하고자

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“성북구”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.

1. “협동조합”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2. “협동조합”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“성북구”가 인정하는 경우
3. “성북구”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

③ “성북구”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협동조합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“협동조합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“성북구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

제13조(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) ① “협동조합”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(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, 장비 등도 포함)을 원상회복하여 “성북구”에게 인도한다.

② 이 약정이 해지 되거나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“협동조합”의 직원에 대하여는 “협동조합”이 모든 책임을 진다.

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 “성북구”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·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“협동조합”은 조사 및

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“성북구”는 제1항의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“협동조합”은 이를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약정의 해석·변경 등)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성북구”와 “협동조합”이 합의하여 결정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“성북구”의 해석에 따르며, “성북구”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통보한 모든 사항도 본 약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.

제16조(약정의 효력발생 등)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민·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, “성북구”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완료되는 때까지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·변경시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조항에 **한하여 효력이 있다.**

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,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“성북구”와 “협동조합”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2월 일

성북구청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(삼선동5가)

성북구청장 김 영 배

협동조합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6길 15(정릉동)

아름다운정릉1동사람들협동조합

이 사장 이 건 평



위탁관리재산목록

재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8가길 6(정릉동)

대 271m²

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

건물중 지상 2층, 옥상 270.16m²

2층 135.08 m² (철근콘크리트)

옥상 135.08m² (철근콘크리트)



등부 2014 년 제 3636 호

인 증

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약정서 에 기재된

성북구청장 김영배, 아름다운정릉1동사람들협동조합 이사장 이견평 등의

각 대리인 김신에 -----

----- 은 본 공증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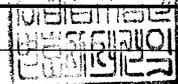
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
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 이 제시한 공무원증 -----

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-----

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

인정 하였다. -----



2014년 12월 1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소속

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
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7

공증담당변호사

Handwritten signature of the notary public.

